



※ 작 성 요 령

(뒷 쪽)

- ① 출고유형 : 과세출고, 과세분환입, 면세출고, 면세분환입, 미납세출고, 미납세분환입으로 구분합니다.  
\*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, 과세출고, 과세분환입, 면세출고, 면세분환입, 미납세출고, 미납세분환입의 순으로 작성하되 출고유형별 합계 및 주류의 종류별, 상표명별 소계를 작성합니다.
- ② 주류의 류 :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 → 도수별로 구분합니다.
- ③ 상표명 :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.
- ④ 알콜도수 :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.
- ⑤ 구분코드 :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기재합니다.(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)  
\* 면세유형코드 : 111 외국으로 반출(주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), 112 외국항행의 선박·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(주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),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(주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), 150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(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), 160 특수용도의 주정(주세법 제32조), 170 국군에 납품(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), 180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유흥음식점에 공급(조세특례제한법 제115), 190 주한미군에 납품(SOFA협정), 200 기타(검사를 위한 목적수거,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(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)  
\* 미납세유형코드 : 010 수출용주류(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), 020 주류제조·가공을 위한 원료용주류(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)
- ⑥ 공급유형 : 유흥음식점용, 가정용, 수퍼연쇄점용, 범칙주로 구분합니다.(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을 기재합니다)
- ⑦ 용량 :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기재합니다.(단위 : ℓ)
- ⑧ 출고분수 : 제조장에서 출고된 분수를 기재합니다.
- ⑨ 출고수량 : ⑦용량 × ⑧출고분수  
\*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.(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)
- ⑩ 기준도수환산량=⑨출고수량×④알콜도수÷기준도수  
\*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.(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)  
\* 기준도수 :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9조 참조
- ⑪ 본당가격 :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(세포함 출고가격)을 기재합니다.
- ⑫ 출고금액 : ⑧출고분수 × ⑪본당가격
- ⑬ 과세표준 :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기재하며, 주정은 ⑨출고수량을 기재하되 합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.
- ⑭ 세율 : 주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기재합니다.
- ⑮ 산출세액 : ⑬ 과세표준 × ⑭세율
- ⑯ 공제세액 : 주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재합니다.
- ⑰ 결정세액 : 출고유형이 과세출고 또는 과세분환입인 경우에는 ⑮산출세액 - ⑯공제세액을 기재하고, 출고유형이 면세출고·면세환입·미납세출고 또는 미납세환입인 경우에는 주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-로 기재합니다.
- ⑱ 가산세 :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.
- ⑲ 납부할세액 : ⑰결정세액 + ⑱가산세
- ⑳ 과세표준 :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주세산출세액을,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⑰주세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.
- ㉑ 세율 :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율을 기재합니다.(10% 또는 30%)
- ㉒ 산출세액 : ⑳과세표준×㉑세율
- ㉓ 가산세 : 교육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.
- ㉔ 납부할세액 : ㉒산출세액+ ㉓가산세